

배우자 출산휴가, 이제 20일까지 쓸 수 있어요

- 2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총 67개 법령 시행

2월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어나고,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월에 총 67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20일로,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6일로 확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2. 23.)

2월 23일부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가 강화된다. 첫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둘째,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면서 유급휴가일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된다. 셋째,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 최대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할 수 있게 된다.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이력관리제 시행(「자동차관리법」, 2. 17.)

2월 17일부터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배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체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시행된다. 이는 전기자동차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전기차 배터리가 진동, 열충격, 연소, 침수 등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어 안전성 인증을 받은 경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 등은 안전성 인증 표시를 해야 하며, 인증 후에도 3년마다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전기자동차 등록 시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원부에 적어야 하고,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자동차관리법」, 2. 21.)

2월 21일부터는 자동차 번호판을 봉인하지 않아도 된다. 1962년에 도입된 봉인 제도는 자동차 뒷면 번호판의 왼쪽을 정부와 무궁화꽃 문양이 새겨진 나사로 고정하는 제도로, 한번 풀면 망가지게 되어 있어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이나 위조, 변조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도로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조, 변조된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고, 위조·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사용되어 번호판 봉인의 필요성이 낮아졌다. 이에 봉인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봉인 나사가 없더라도 자동차 번호판은 고정하여 부착해야 한다.

유치원, 특수학교, 임시교실, 기숙사 등 신설 시 스프링클러 등 설치(「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7.)

2월 7일부터 신축되거나 증축, 개축, 이전되는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소방시설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 기준을 따라야 한다. 종전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적이나 층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설치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면적 등과 상관없이 신설되는 모든 유치원과 특수학교 전체 층, 전체 기숙사, 임시교실까지 그 의무가 확대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대변인실	책임자	대변인	안은경 (044-200-6511)
		담당자	사무관	조예진 (044-200-6515)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붙임] 2025년 2월 시행법령 목록(2025. 1. 22.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087호	법무부	2. 1.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086호	법무부	2. 1.
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673호	해양수산부	2. 1.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47호	환경부	2. 1.
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413호	국토교통부	2. 1.
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03호	국토교통부	2. 1.
7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81호	법무부	2. 3.
8	검사정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35호	법무부	2. 3.
9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5145호	법무부, 행정안전부	2. 3.
10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3181호	법원행정처	2. 3.
11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대법원규칙	제3183호	법원행정처	2. 3.
12	법원사무관리규칙	대법원규칙	제3185호	법원행정처	2. 3.
13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대법원규칙	제3182호	법원행정처	2. 3.
14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73호	국토교통부	2. 3.
1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81호	교육부	2. 7.
16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법률	제20196호	산업통상자원부	2. 7.
17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20226호	기상청	2. 7.
18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제20227호	기상청	2. 7.
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0213호	보건복지부	2. 7.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043호	보건복지부	2. 7.
2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35호	국토교통부	2. 7.
2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14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2. 7.
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07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2. 7.
2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29호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2. 7.
25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0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2. 7.
26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30호	기상청	2. 7.
27	화장품법	법률	제2024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2. 7.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2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82호	산업통상자원부	2. 7.
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043호	보건복지부	2. 7.
30	의료기기법	법률	제19608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2. 9.
31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법률	제20284호	국가유산청	2. 14.
32	도로법	법률	제20294호	국토교통부	2. 14.
3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85호	국가유산청	2. 14.
3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86호	국가유산청	2. 14.
3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2025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2. 14.
36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0298호	국토교통부	2. 14.
3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02호	공정거래위원회	2. 14.
3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88호	문화체육관광부	2. 14.
3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274호	소방청	2. 14.
4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99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2. 16.
4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제19674호	국토교통부	2. 17.
4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208호	국토교통부	2. 17.
43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9685호	국토교통부	2. 17.
44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0176호	국토교통부	2. 17.
45	광산안전법	법률	제20317호	산업통상자원부	2. 21.
46	군무원인사법	법률	제20310호	국방부	2. 21.
47	먹는물관리법	법률	제20332호	환경부	2. 21.
48	식품위생법	법률	제2034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2. 21.
49	약사법	법률	제20328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2. 21.
50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제20315호	소방청	2. 21.
51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0339호	국토교통부	2. 21.
52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12호	국방부	2. 21.
5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31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2. 21.
54	한국국토정보공사법	법률	제20341호	국토교통부	2. 21.
55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20334호	환경부	2. 21.
56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20518호	환경부	2. 21.
5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8호	소방청	2. 21.
58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511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2. 21.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5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435호	국토교통부	2. 21.
60	고용보험법	법률	제20519호	고용노동부	2. 23.
61	근로기준법	법률	제20520호	고용노동부	2. 23.
6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21호	고용노동부	2. 23.
6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2035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28.
6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56호	국가보훈부	2. 28.
6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20351호	교육부	2. 28.
66	점자법	법률	제20359호	문화체육관광부	2. 28.
6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211호	교육부	2. 28.